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영업 허용〉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0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업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적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정하는 <u>대규모점포등</u>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대규모점포등과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 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u> ----- -----.
1. 2. (생략) ②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¹⁾, 대형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행위도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1)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④ (생략)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바 있으며,²⁾ 이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범위는 온라인 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업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영업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 등만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로서는 도시 중심의 새벽배송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정주 여건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프라인 영업제한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행태를 막을 수 없으므로 건전한 유통질서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온라인유통의 영업제한은 여전히 필요하

2)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517

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과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가 도입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61
